

결 정

2018 - 3061 신문윤리강령 위반
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

주 문

코리아헤럴드(koreaherald.com) 2018년 1월 12일자 「범행 중 ‘그곳’ 다친 도둑, 되려 주인 고소 ‘적반하장」」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『범행 중 ‘그곳’ 다친 도둑, 되려 주인 고소 ‘적반하장’

Published : Jan 12, 2018 - 10:51 Updated : Jan 12, 2018 - 10:51

아일랜드의 한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국부를 다친 도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 외신 매체는 11일 전했다.

주인은 아일랜드의 캐번 지역(County Cavan)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.

지난달 남성 3명이 망치를 이용해 가게에 침입했고, 이 중 한 명은 도망치려다 책장에 국부가 긁혀 상처가 났다고 매체는 보도했다.



범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.

그러다 최근 가게 주인이 부상 입은 도둑의 변호사로부터 고소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. (khnews@heraldcorp.com) 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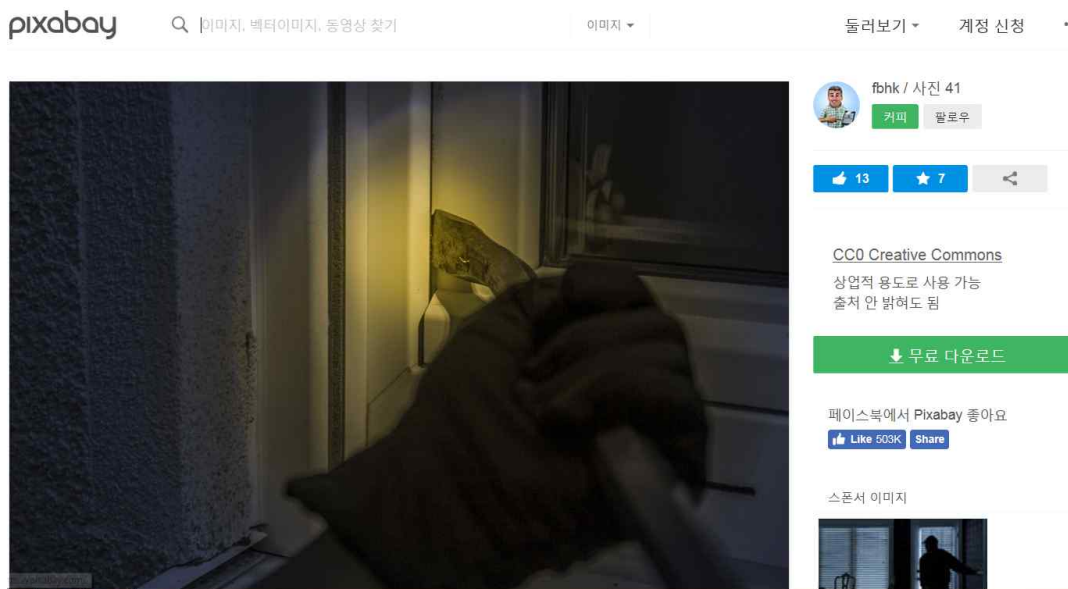
<http://khnews.kheraldm.com/view.php?ud=20180112000302&kr=1&md=20180113003112_BL&kr=1>

※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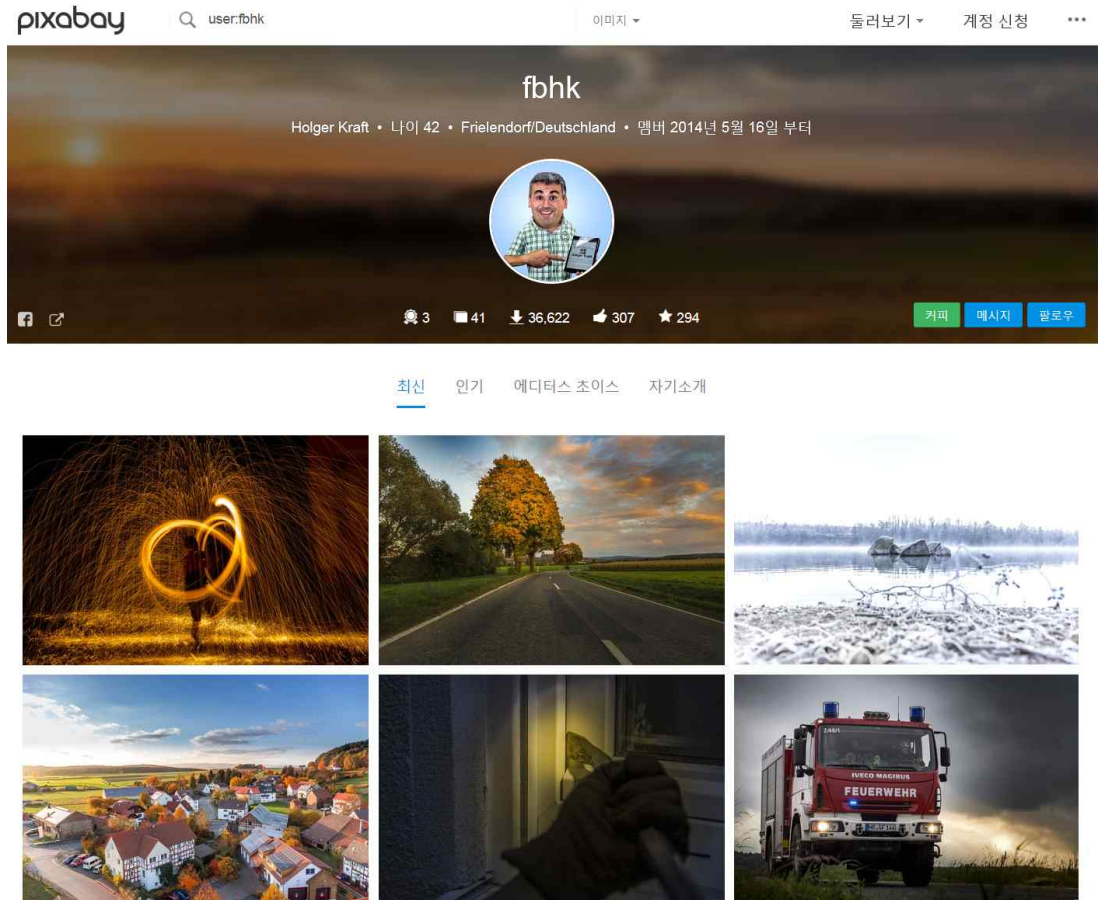


<캡처시각 18. 1. 12. 11:51>

※참고 :



<<https://pixabay.com/ko/%EB%8F%84%EB%82%9C-%EB%B0%A4%EC%97%80-%EC%B0%BD-%ED%81%AC%EB%A1%9C%EC%9A%B0-%EB%B0%94-%ED%9A%8C-%EC%A4%91-%EC%A0%84%EB%93%B1-%EC%9E%A5%EA%B0%91-%EC%96%B4%EB%91%90%EC%9A%B4-1678883>>



<<https://pixabay.com/ko/users/fbhk-255836>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아일랜드의 한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국부를 다친 도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본문에 사용한 사진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,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.

위 사진은 사진공유 사이트인 픽사베이(pixabay)에 오른 것으로, 독일의 프리랜서 작가 홀거 크라프트의 작품이다. 이 사진은 비록 해당 사이트에 “상업적 용

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”고 돼 있다.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등 시청각물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, 보도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.

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④(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,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⑥(관계사진 게재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④(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)

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, 그림, 음악, 인터넷게시물, 댓글, 기타 시청각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.

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⑥(관계사진 게재)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.